

원격진료 시범사업

-
-
-
-

-
-
-
-

1. 원격진료 시범사업

- ◆ 적용일자 : 2019년 4월 22일
- ◆ 사업내용 : 의료기관 촉탁의-요양시설 간호사간 스마트협진후 의약품 등 투약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원외처방전 발급
- ◆ 급여내용 :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중 외래관리료와 동일하게 산정 (원외시설 진찰료와 동일)
의원 : AA254080
병원 : AA255080
환자본인부담 없음
- ◆ 대상자 :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입소한 대상자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하고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수급권자
- ◆ 프로그램 입력방법 : 초재진 `D 원외시설`로 선택
특정기호 `S015(요양시설 건강관리 강화 원외처방전 발급 시범사업)
시범사업내역과 다른 진료시 `타상병진료`로 선택
- ◆ 청구방법 : 시범사업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 분리청구